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-39호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7월 9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- 1. 개정이유
- 미디어의 융·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.
- 2. 주요내용
 - 가. 법률 명칭을 "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"로 개정
 - 나. 영상물, 기기,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
- 다. 복합게임장업(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)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, 노래연습장업, 당구장업 등문화·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
 - 라.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

- 마.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
- 바.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사. "게임이용자 보호지침"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아.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, 전체이용가 등급 등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
- 자. 평가용게임물 확인,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차.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.
 - 카.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
- 타. 콘도미니엄업, 유원시설업, 영화상영관, 대규모점포(대형할인마트)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
- 파. 게임사와 이용자,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"게임분쟁조정위원회"를 구성
- 하. '한국게임산업진흥원'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- 3. 의견제출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

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게임산업과장, 주소:110-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, 전화:3704-9363~4, FAX:3704-937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cst.go.kr

)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법령안

첨부파일없음

규제영향분석서

첨부파일없음
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
첨부파일없음